

統·班長 報償品에 관한 行政事務調查 結果  
報告書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구정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調査의 目的

'93년도 연말 통·반장 보상품 구입 및  
배포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  
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장 보상  
품 구입 및 배포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 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향후 이와

2. 調査期間

1994. 1. 24.(월)~1994. 2. 4(금) [12  
일간]

3. 調査實施 對象機關

○ 마포구청(총무국, 재무국)

4. 調査 實施 經過

가. 調査委員會 編成 및 調査場所

구 분	조 사 위 원	대 상 기 관	조 사 장 소	사 무 직 원
총 무 재 무 위 원 회	(위원장) 심재창 (간사) 윤동현 (위원)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렬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마포구청 총무국 재무국	총무재무 위원회 실	김건재전문위원 박진양 신승관

나. 調査日程

日 時	調査 實施 對象 機關 (調査內容)	備 考
'94. 1. 24.(월)	• 조사의 건 상정 • 국장인사 및 간부소개 • 통·반장 보상품에 관한 보고	
'94. 1. 26.(수)	• 조사의 건 상정 • '91년, '92년도 통·반장 보상품에 대한 질문 답변 • 자료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결의	
'94. 1. 27(목)	• 조사의 건 상정 • '93년도 통·반장 보상품에 관한 질문 답변	
'94. 1. 31.(월)~ '94. 2. 2.(수)	• 자료조사, 현지 가격조사를 위한 전남 완도군 약산면 현지 조사	
'94. 2. 4.(금)	• 조사의 건 상정 • 소위원회 활동 보고 • '93년도 통·반장 보상품에 관한 질문 답변 • 통·반장 보상품에 관한 보고서 작성	

## \*소위원회 구성 현지조사

- 소위원회 위원(7인) :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유남렬, 윤정용, 이강필
- 구 성 목 적 : 통·반장 보상품 구입 및 배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이고도 자세한 내용 파악을 위하여 현지에 출장, 사실여부확인 및 가격현황 등 심도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 현지출장 기간 : '94. 1. 31(월)~2. 2(수) 3일간

- 현지조사 대상 : 전남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492 약산수산업협동조합
- 현지조사 결과 : 별첨 소위원회 보고서 참조

## 다. 調査方法

- 조사대상기관에 대해 통·반장 보상품에 관한 보고, 서류제출요구, 추진내용에 대한 질문, 답변 및 소위원회 구성 현지가격조사 등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5. 調査結果

## 가. 主要調査 實施 内容

감사 대상 기관	주 요 조 사 내 용	비 고
총 무 과	○ '91년도 설날 통·반장 보상품 구입의 적정성 여부	
재 무 과	○ '91년도 중추절 통·반장 보상품 구입의 적정성 여부	
	○ '91년도 연말 통·반장 보상품 구입의 적정성 여부	
	○ '92년도 설날 통·반장 보상품 구입의 적정성 여부	
	○ '92년도 중추절 통·반장 보상품 구입의 적정성 여부	
	○ '92년도 연말 통·반장 보상품 구입의 적정성 여부	
	○ '93년도 설날 통·반장 보상품 구입의 적정성 여부	
	○ '93년도 중추절 통·반장 보상품 구입의 적정성 여부	
	○ '93년도 연말 통·반장 보상품 구입의 적정성 여부	

## 나. 指摘事項('93년도 연말 통·반장 보상품)

- 약산수산업협동조합의 직인, 고무인 및 조합장 사인은 위조된 것으로 판단됨.
-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는 약산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고무인과 조합장의 사인은 위조한 것으로 판단됨.
- 입찰서는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 계약보증금 납부서는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고무인과 조합장의 사인은 위조한 것으로 판단됨.
- 계약각서는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고무인과 조합장의 사인은 위조한 것으로 판단됨.
- 입찰서는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고무인과 조합장의 사인은 위조한 것으로 판단됨.

- 사용인감계는 위조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자등록증은 완도수협 소속 삼도수산 대표 김광선씨에게 전미역 납품용으로 징구한 것으로 확인됨
- 법인 등기부등본은 완도수협 소속 삼도수산 대표 김광선씨에게 전미역 납품용으로 징구한 것으로 확인됨

#### 6. 處理意見

- '91년도, '92년도 통·반장 보상품 구입과정도 철저히 조사를 시행하였어야 하나, 물의가 야기된 '93년도 연말 통·반장 보상품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시행하여 지적사항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고

또한, 구청에서 “김희정”씨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고, 본건과 관련 된 직원들은 직위해제되어 최종 징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검찰조사가 완료되면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통·반장 보상품 구입시에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한 구매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엄정한 심사와 확인을 거쳐 계약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조사를 할 때에는 물품가격을 정확히 책정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7. 處理要求事項

-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고발된 민간인 및 관련공무원에 대한 최종 조치결과, 각종계약 및 재무업무의 정확한 취급과 처리 계획, 취급공무원

에 대한 교육계획과 실시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구 행정의 정책입안, 수립, 시행과정에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 8. 其他 特記 事項

- 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 권한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소위원회 활동중 전남 완도군 약산면 소재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 출장하여 조사할 때 조합장이 부재중으로 면담할 수가 없었으며 완도군 수산업협동조합 소속 “삼도수산” 김광선씨가 본건에 대하여 상당부분 개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완도로 이동하여 김광선씨를 만나려 했으나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만나지 못하는 등(회피하는 것 같았으나 조치방법이 없었음) 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데 따르는 법적인 한계점과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行政事務調査 小委員會 調査 報告書

##### 1. 소위원회 구성 목적

'93년도 연말 통·반장 보상품 구입 및 배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이고도 자세한 내용 파악을 위하여 현지에 출장, 사실여부 확인 및 가격 현황 등 심도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음.

##### 2. 소위원회 활동기간

1994. 1. 31(월)~1994. 2. 4(금)  
[5일간]

## 3. 소위원회 현지조사 실시 경과

## 가. 소위원회 구성

－위 원(7인) :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유남렬, 윤정용,  
이강필  
－사무직원(2인) : 김전재 전문위원,

## 신승관

## 나. 현지조사 대상

전남 완도군 약산면소재 약산수산업협동조합

## 다. 현지조사 일정

일 시	실 시 내 용	비 고
'94. 1. 27(목)	소위원회 구성 현지출장 의결 현지조사 협조요청(약산수산업협동조합)	
1. 31(월) ~2. 2(수)	현지확인, 자료조사	약산수산업협동조합 김송민 상무
2. 4(금)	현지조사 결과보고	

## 4. 주요조사 실시내용

가. 마포구청과 약산수산업협동조합간에 멸  
치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의 여부

마포구청과 약산수산업협동조합간에 멸  
치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함.

나. 회광물산 김회정씨를 알고 있는지 여  
부

약산수산업협동조합 김송민 상무는 전  
혀 모른다고 함.

다. 회광물산 김회정씨에게 구매계약을 위  
임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완도수협 소속 삼도수산 대표 김광선  
씨에게 전미역 납품계약용으로 조합장  
인감증명, 범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  
록증, 정관 등을 제출 위임한 것이  
며, 회광물산 김회정씨에게는 구매계약  
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함.

라. 수산업협동조합 직인, 고무인 및 조

## 합장 사인의 진위여부

수산업협동조합 직인, 고무인 조합장  
사인은 별지와 같이 위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산수산업협동조합 김송민  
상무에게 확인하였음.

## 마.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의 진위여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는 약산수산업협동  
조합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고무인  
과 조합장의 사인은 위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산수산업협동조합 김송민  
상무에게 확인하였음.

## 바. 계약보증금 납부서의 진위여부

계약보증금 납부서는 약산수산업협동조  
합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고무인과  
조합장의 사인은 위조한 것으로 판단  
되며, 약산수산업협동조합 김송민 상무  
에게 확인하였음.

## 사. 계약각서의 진위여부

계약각서는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작  
성한 사실이 없고, 고무인과 조합장의

사인은 위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산수 산업협동조합 김송민 상무에게 확인하였음.

#### 아. 입찰서의 진위여부

입찰서는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고무인과 조합장의 사인은 위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산수산업협동조합 김송민 상무에게 확인하였음.

#### 자. 사용인감계의 진위여부

사용인감계는 위조한 것으로 판명.

#### 차. 사업자등록증의 진위여부

사업자등록증은 완도수협 소속 삼도수산 대표 김광선씨에게 전미역 납품계약으로 정구한 것으로 확인됨.

#### 카. 법인 등기부등본의 진위여부

법인 등기부등본은 완도수협 소속 삼도수산 대표 김광선씨에게 전미역 납품계약으로 정구한 것으로 확인됨.

#### 타. 제품사양서를 FAX로 발송했는지의 여부

제품사양서를 FAX로 발송하지 아니했다고 주장하나, FAX실현 결과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발송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따라서 우리 구 통·반장 보상품 구매계약에 약산수협이 일부 서류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약산수협내에서 FAX를 발송한 직원을 밝혀 달라는 요구에는 정확한 답변을 피하고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음.

#### 파.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멸치(디포리)를 취급하는지의 여부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멸치(디포리)를 봄, 가을에 젓갈용으로만 취급하며, 우리 구와 구매계약을 체결할 당

시에는 재고도 없었고 생산도 하지 않았다고 함.

#### 질의응답 대화 요약

○김송민상무 : 약산수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하신 데 대해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계로 조합장님과 전무님이 이자리에 함께 참석치 못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마을을 간단히 구두로 설명드리면, 면적 24.4km<sup>2</sup>, 해안선 46km, 도서는 유인도 1, 무인도 4개이고, 인구는 4,855명, 호수는 1,340호입니다.

저희 약산수산업협동조합의 구성은 임원 8명, 직원 28명 대의원 29명이고, 어촌계장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물 생산고는 약 200억원으로 미역, 김, 어류등을 취급하며 경제사업, 여수신, 판매보관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소개의 말씀 잘들었습니다.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잘아시겠지만 통·반장 및 유관단체위원 연말보상품 관계인 멸치납품으로 저희 마포구에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몇가지 확인코자 마포구의회 총무, 재무위원 및 관계공무원들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 인사소개)  
○위원장 : 마른 멸치 구매계약에 대하여 몇가지 확인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송민상무 : 예! 그려겠습니다.

○윤동현위원 : 지난해 12월 마포구청과 마른 멸치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송민상무 : 계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 윤동현위원 : 계약서상에 날인된 직인과 사인은 수협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 김송민상무 : 를립니다.

○ 윤동현위원 : 삼도물산 김회정을 아십니까?

○ 김송민상무 : 모릅니다.

○ 재무과직원 : 우리 구에 제출한 법인인감, 직인, 사용인감, 고무인을 각인하여 사용하라고 김회정에게 위임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다?

○ 김송민상무 : 위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 시험결과(윤동현 위원과 총무과장 통화)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보낸 것이 판명됨.  
(김상무확인)

○ 김유현위원 : 시험결과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보낸 것이 확실한데 누가 김회정씨와 밀착된 공무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상무 한참동안 침묵)

○ 김송민상무 : 우리 완도군에는 김 수출이  
년간 28,400톤 가량이 수출됩니다.

금년에는 14,000톤으로 절감수출 되어 수산경제를 염려해 왔습니다. 삼도물산 김광선씨에게 우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전미역 10톤 가량을 판매의뢰하여 '93년 12월 17. 18일경 마른 전미역에 따른 인감증명(사인), 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을 준적이 있어도 김회정한테는 준적이 없습니다.

○ 김성환위원 : 김회정씨한테 모든것을 위임한 적도 없고, 더욱이 약산수산업협동조합장의 직인, 사인, 고무인을 각인 도용해서 사용한 김회정을 지금까지 사법처리인 고발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송민상무 : 사건이 이미 마무리 된줄 알고 사법처리를 안했습니다.

○ 윤동현위원 : 모든 절차를 확인도 안해 보

고 삼도물산 김광선한테 서류를 준 것은  
사전에 어떤 문제가 결탁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김송민상무 : 삼도물산 김광선은 제가 완도  
수협에서 근무할때 대의원이었고 조합원중  
가장 가까운 친구였으므로 모든것을 믿고  
전미역 납품하는 것을 모두 위임했습니다.

○ 윤동현위원 : 삼도물산 김광선씨와 전화좀  
하고 싶은데 연결좀 하여 주시겠습니까?

○ 김송민상무 : 연락은 되나 지금은 부재중입니다.

○ 윤동현위원 : 이 조사가 끝나면 완도로 가  
는데 연락이 되면 만나 볼 수 있겠습니까?

○ 김송민상무 : 주선해 드리지요. 완도에서 머  
무르시는 장소만 가르쳐 주십시오.

○ 윤정용위원 : 김회정씨한테 사용인감제와 범  
인인감증명서를 FAX로 보내준 사람은 분명  
히 조합원이나 직원이 약산수협 사무실에서  
보낸 것이 확실시 되었는데 상무님은 어떻  
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송민상무 : 삼도물산 김광선을 믿고 전미역  
납품을 전부 위임했는데 저도 당한 것  
같습니다.

○ 윤정용위원 :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계약서  
상에 제출된 것과 같습니까?

○ 김송민상무 : 맞습니다.

○ 윤정용위원 : 계약서상에 제출된 서류중 범  
인 등기부등본('93. 12. 17 발급)은 약산수  
협에서 사용중인 것입니까?

○ 김송민상무 : 현재 사용중인 것입니다.

○ 유남렬위원 : 제출된 약산수협의 서류는 누  
가 누구한테 언제 무슨 용도로 제공된 서  
류입니까?

○ 김송민상무 : 완도군 완도읍 축청리 소재

삼도수산 김광선에게 서울시 및 각 구청에 전미역 납품용으로 주었습니다. 같은 공직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린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정확히 확인 및 해결하지 않고 위원님들까지 오시게 만들었습니까?

○윤동현위원 : 총무과에서 구매방침 결정하여 재무과에 계약의뢰가 왔을 때 같은 공공단체로써 계약의 첫째 조건인 신의 성실 원칙에 의하여 약산수협만을 믿고 미비된 서류 법인인감 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등을 보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질의 및 응답하신 내용으로 보아 약산수협에서는 전미역 납품용으로 삼도물산 김광선씨한테 주었다는데 12월 23일 FAX로 보내온 마른멸치 사양서 및 법인인감증명에는 약산수협의 FAX 전화번호가 0633-53-8316으로 적혀있는데 약산수협에서는 전혀 관여치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송민상무 : 저희 약산수산 조합의 FAX전화는 0633-54-0536입니다. 또한 FAX를 저희 약산수협에서는 안보냈으며 절대로 관여한 바 없습니다.

○재무과직원 : 우리 구 재무과에서 의문사항이 있어 완도전화국에 54-0536과 53-8316을 서면으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약산수협으로 (동일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귀조합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송민상무 : 저희 조합의 FAX전화번호인데 약산수협에서는 보낸 일이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 FAX성능에 대해서는 잘모르지만 제가 아는 견해로는 종이에는 반드시 보낸 장소의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포구청 총무과에

송수신 시험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강필위원 : 분명히 조합원이나 임원 및 직원중에 누가 관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광선이 수협사무실에서 몰래 보낼리는 없다고 보는데 직원이나 임원, 조합원중 누가 했을까요?

○김송민상무 :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합장 전무님은 감사관계로 부재중이고 내일 오시면 모든것을 말씀드려 직원교육 시간을 통하여 누가 보낸 것인지 한번조사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직원 : 아직 대금지출이 안 되어서 참고 하려는데 12월 20~23일 디포리 시세를 좀 알 수 없을까요?

○김송민상무 : 저희 완도지역에서 디포리는 봄, 가을에 젓갈용으로만 조금 생산되는데 물량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많이 있어 답변은 곤란합니다만 대략적인 가격은 3kg박스에 9000원~10,000원 정도합니다.

○윤동현위원 : 김광선씨를 한번 만나고 가고 싶은데 연락할 수 없을까요?

(윤위원전화-부재중)

○김송민상무 : 가는 목적지에서 연락주시면 통화가 되면 만나뵙도록 주선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총무과직원 : 총무과직원의 말을 빌면 작년 12월 23일 오후 5시경 약산수협의 전무 혹은 상무님과 통화하여 디포리 품질1등급에 대한 근거와 영양분석에 대한 근거 제출을 요구하여 약산수협으로부터 FAX를 받았던 바 통화하신 분이 상무님이 아니신지요?

○김송민상무 : 예?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 마른멸치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약산수산업협동조합이 보다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목포장 여관, 솔다방, 완도시외버스터미널  
에서 수차례 전화통화(김광선씨 부인)를  
하여 김광선씨를 면담코자 하였으나 곧  
“소재파악 하겠다”, “연락이 안된다”등의  
이유로 회피하는 것 같았음.